|  |  |  |
| --- | --- | --- |
| **업무장소 직업위생 감독관리 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령 제47호  《업무장소 직업위생 감독관리 규정》을 2012년 3월 6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사무회의의 심의통과를 거쳐 공포하는 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2009년 7월 1일 발표한 《업무장소 직업건강 감독관리 잠행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뤄린(骆琳)  2012년 4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직업위생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고용단위의 직업병 예방치료의 주체책임을 제고하며, 직업병의 위해를 예방, 통제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관련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고용단위의 직업병 예방치료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그 감독관리를 시행하면서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고용단위는 직업볍 예방치료 업무를 강화해야 하며, 노동자에게 법률, 법규, 규장,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하는 업무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노동자의 직업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제4조** 고용단위는 직업병을 예방치료하는 책임주체로서 본 단위에서 발생한 직업병 위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고용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직업병 예방치료 업무에 대해 전면적인 책임을 진다.  **제5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과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전국 고용단위 직업위생의 감독관리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과 본 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의거하여 본 행정구역 내 고용단위 직업위생 의 감독관리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6조** 직업병 예방치료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위생 기술서비스기구는 《직업위생 기술서비스기구 감독관리 잠행규정》과 유관 표준, 규범, 집행준칙의 요구에 따라 사용단위에게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제7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에 고용단위가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와 직업병 위해사고를 고발할 수 있다.  **제2장 고용단위의 직책**  **제8조** 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고용단위는 반드시 직업위생 관리기구 또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전임 직업위생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기타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고용단위 노동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직업위생 관리기구 또는 조직을 설치하거나 지정해야 하며, 전임 직업위생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100명 이하인 경우, 전임 또는 겸임 직업위생 관리인원을 배치해야 하며, 본 단위의 직업병 예방치료 업무에 책임을 지도록 한다.  **제9조** 고용단위의 주요책임자와 직업위생 관리인원은 본 단위가 종사하는 생산경영활동에 상응하는 직업위생 지식과 관리능력을 구비해야 하며 직업위생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고용단위 주요책임인, 직업위생 관리인원의 직업위생 교육훈련은 아래의 내용을 주로 포함해야 한다.  (1) 직업위생 관련 법률, 법규, 규장과 국가 직업위생 표준  (2) 직업병 위해 예방과 통제의 기본지식  (3) 직업위생 관리 유관지식  (4)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내용  **제10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 대해 승진 전 직업위생 교육훈련과 재직기간의 정기적인 직업위생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하며, 직업위생 지식을 보급해야 한다. 노동자가 직업병 예방치료 법률, 법규, 규장, 국가직업위생 표준과 운영규정을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직위의 노동자에 대해 전문 직업위생 교육훈련을 진행하고, 교육훈련 합격 후 직위업무에 임할 수 있다.  공법, 기술, 설비, 재료의 변경 또는 직위조정으로 인해 노동자가 접촉하는 직업병 위해요소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임직 전 직업위생 교육훈련을 새로 진행해야 한다.  **제11조**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고용단위는 직업병 위해 예방치료 계획과 실시방안은 제정해야 하며, 아래에 열거된 직업위생 관리제도와 운영규정을 수립, 완비해야 한다.  (1) 직업병 위해 예방치료 책임제도  (2) 직업병 위해 경고와 고지제도  (3) 직업병 위해항목 신고제도  (4) 직업병 예방치료 홍보 교육훈련 제도  (5) 직업병 방호시설 유지점검 제도  (6) 직업병 방호용품 관리제도  (7) 직업병 위해 모니터링 및 평가관리 제도  (8) 건설항목 직업위생 “삼동시(三同时, 주: 동시설계, 동시시공, 동시투입/생산)”관리제도  (9) 노동자 직업건강 감독보호 및 그 당안관리 제도  (10) 직업병 위해사고 처리와 보고제도  (11) 직업병 위해 응급구조와 관리제도  (12) 직위 직업위생 운영규정  (13) 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기타 직업병 예방치료 제도  **제12조**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고용단위의 업무장소는 아래의 기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생산배치가 합리적이며, 유해작업과 무해작업이 분리되어 한다.  (2) 업무장소와 생활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업무장소에는 거주할 수 없다.  (3) 직업병 예방치료 업무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호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4) 직업병 위해요소의 정도 또는 농도가 국가직업위생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5) 탈의실, 샤워실, 임신부 휴게실 등 부대 위생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6) 설비, 공구, 도구 등 시설 노동자 생리, 심리건강의 보호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7) 법률, 법규, 규장과 국가 직업위생 표준의 기타규정  **제13조** 고용단위 업무장소에 직업병 목록에서 열거한 직업병 위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직업병 위해항목 신고방법》 규정에 따라 적시에 사실대로 소재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에 직업병 위해항목을 신고하고,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4조** 신축, 개조, 확장공정 건설항목과 기술개조, 기술도입 항목(이하 “건설항목”으로 통칭)이 직업병 위해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설단위는 《건설항목 직업위생 “삼동시(三同时)” 감독관리 잠행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에 비안, 사정, 심사와 준공검수를 신청해야 한다.  **제15조** 직업병 위해를 조성하는 고용단위는 눈에 잘 띄이는 위치에 공고란을 설치하여, 직업병 예방치료와 관련된 규장제도, 운영규정, 직업병 위해사고 응급구조 조치와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업무장소, 작업부서, 설비, 시설은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 경고표식》(GBZ158)규정에 근거하여 눈에 잘 띄이는 위치에 도형, 경고선, 경고문구 등 경고표식과 중문 경고 설명을 배치해야 한다. 경고설명은 발생하는 직업병 위해의 종류, 불이익, 예방과 응급처치 조치 등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유독물이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작업부서는 《유독물 작업부서 직업병 위해고지규범》（GBZ/T203）에 근거하여 눈에 잘 띄이는 위치에 유독물 고지카드를 배치하고, 고지카드에는 유독물의 명칭, 물리화학 특성, 건강위해, 방호시설 및 응급처리 등 고지내용과 경고표식을 명기해야 한다.  **제16조** 고용단위는 노동자들에게 국가직업위생표준에 부합하는 직업병 방호용품을 제공하고 노동자가 사용규칙에 따라 정확하게 착용, 사용할 것을 독려, 지도해야 하며, 금품지급으로 직업병 방호용품 지급을 대체할 수 없다.  고용단위는 직업병 방호용품에 대해 주기적 유지점검, 보수를 진행하여 방호용품의 효과를 보장해야 하며, 국가직업위생표준에 미부합 하거나 이미 효과를 상실한 직업병 방호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응급 직업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독, 유해한 업무장소의 경우, 고용단위가 반드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현장 응급구조 용품, 세척설비, 응급 비상통로와 필요한 위험배출구를 배치해야 한다.  현장 응급구조 용품, 세척설비 등은 응급 직업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장소 또는 근접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눈에 잘 띄이는 곳에 설치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갑작스럽게 유독물질의 밀봉, 반밀봉이 새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업무장소는 본 조 제1관, 제2관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고용단위는 반드시 사고 통풍장치 및 사고 배출시스템과 연결된 누출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선 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 저장하는 장소는 국가 유관규정에 따라 방사선 표지를 명확하게 설치해야 한다. 그 입구는 국가 유관 안전과 방호표준의 요구에 따라 안전과 방호시설 및 필요한 방호안전 연동장치, 경보장치 또는 업무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방사성 장치의 생산 시운전과 사용장소는 오작동 방지, 업무인원이 갑작스럽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구비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장비와 복사(辐射) 유형과 복사 수준에 상응하는 방호용품과 모니터링 검측기 - 개인 피폭량 측정 경보, 고정/휴대용 복사 모니터링, 표면 오염 모니터링, 유출물 모니터링 설비 등 포함 – 를 필히 배치하고, 방사선 접촉 가능성이 있는 업무인원이 개인 피폭량 측정기를 패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8조** 고용단위는 직업병 방호설비, 응급구조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수리와 관리를 진행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그 성능과 효과를 검사하여 정상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독단적으로 철거하거나 사용을 중지할 수 없다.  **제19조**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고용단위는 전문인원이 책임을 지는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인 업무상태를 유지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제20조**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고용단위는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직업위생 기술서비스 기구에 위탁하여 매년 최소 1회 이상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한다.  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고용단위는 전관 규정 외에도 상응하는 자질을 구비한 직업위생 기술서비스 기구에 위탁하여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직업병 위해현황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검측, 평가결과는 본 단위 직업위생 당안에 보존해야 하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하고 노동자에게 공포해야 한다.  **제21조**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고용단위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시에 상응하는 자질을 갖춘 직업위생 기술서비스 기구에 위탁하여 직업병 위해 현황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1) 직업위생안전허가증을 최초 신청하거나 직업위생안전허가증의 유효기간 만료로 교환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직업병 위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상황  고용단위는 직업병 위해현황 평가보고 중 제기된 건의와 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직업병 위해현황 평가결과 및 개선상황을 본 단위 직업위생 당안에 보존해야 한다.  **제22조** 고용단위가 일상의 직업병 위해 모니터링 또는 정기검측, 현황평가 과정 중에서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를 발견한 경우, 즉시 그에 상응하는 처리조치를 취하여 위생환경과 조건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여전히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직업병 위해요소가 존재하는 업무를 중지하고, 직업병 위해요소를 처리한 후, 국가직업위생표준과 위생요구에 부합시킨 후에야 다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 고용단위에게 직업병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설비를 제공한 경우, 중문 설명서를 제공해야 하며, 설비의 눈에 잘 띄이는 위치에 경고표시와 중문 경고설명을 배치해야 한다. 경고설명은 설비의 성능,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 안전조작과 유지관리 주의사항, 직업병 방호조치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전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검사해야 하며,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고용단위에 직업병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화학품, 방사성 동위원소와,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재료를 제공한 경우, 중문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설명서에는 제품특성, 주요성분, 존재하는 유해요소, 발생 가능한 위해결과, 안전사용 주의사항, 직업병 방호와 응급구조 조치 등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품포장에는 눈에 잘 띄이는 경고표시와 중문 경고설명이 있어야 한다. 상술한 재료를 저장하는 장소는 규정한 위치에 위험물 표시 또는 방사성 경고표시를 배치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전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검사해야 하며,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 어떠한 고용단위도 국가가 사용금지를 명령한 직업병 위해 발생가능 설비 또는 재료를 사용할 수 없다.  **제26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직업병 위해 발생업무를 직업병 방호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단위와 개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 직업병 방호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단위와 개인은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업무를 받을 수 없다.  **제27조** 고용단위는 직업병 위해와 노동자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는 신기술, 신공법, 신자재, 신설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점진적으로 직업병 위해가 발생 가능한 기술, 공법, 재료, 설비를 교체해 나가야 한다.  **제28조** 고용단위는 도입한 기술, 공법, 재료, 설비에 대해 그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를 숙지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방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업병 위해가 있는 기술, 공법, 재료에 대해, 그 위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고 도입한 경우 고용단위는 조성한 직업병 위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29조**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노동계약(초빙계약 포함, 이하 동일)을 체결할 때에는 업무과정 중 발생 가능한 직업병 위해 및 그 결과, 직업병 방호조치와 대우 등 사실대로 노동자에게 고지하고, 노동계약에 명기해야 하며, 은폐하거나 기만할 수 없다.  노동자가 노동계약 기간 동안 업무부서 또는 업무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체결한 노동계약 중 고지하지 않은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 고용단위는 전관 규정에 의거하여 노동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원 계약에의 관련 조항을 협의하여 변경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본 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노동자는 직업병 위해가 존재하는 업무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단위는 그로 인해 노동자와 체결한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제30조** 직업병 위해 요소 접촉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 고용단위는 《고용단위 직업건강 감호 감독관리방법》, 《방사성 업무인원 직업건강 관리방법》, 《직업건강 감호 기술규범》(GBZ188), 《방사성 업무인원 직업건강 감호 기술규범》(GBZ235)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재직 전, 재직 중, 이직 시의 직업건강 검사를 조직하고 검사결과 서면을 사실대로 노동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직업건강 검사비용은 고용단위가 부담한다.  **제31조** 고용단위는 《고용단위 직업건강 감호 감독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노동자를위해 직업건강 감호문건을 구축해야 하며, 규정의 기한에 따라 적절히 보존해야 한다.  직업건강 감호문건은 노동자의 직업기록, 직업병 위해 접촉기록, 직업건강 검사결과, 처리결과와 직업병 진료 등 유관 개인 건강자료를 포함해야 한다.  노동자가 고용단위를 떠날 경우, 본인의 직업건강 감호문건 사본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고용단위는 사실대로 무상제공 하고, 제공하는 사본 상에는 인감을 날인한다.  **제32조** 노동가 건강이 손상되어 직업병 진단, 감정 진행이 필요한 경우, 고용단위는 직업병 진단, 감정에 필요한 노동자의 직업기록과 직업병 위해 접촉기록,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검측결과와 방사성 업무인원 개인 피폭모니터링 결과 등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33조** 고용단위는 미성년 직원을 직업병 위해 접촉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치할 수 없으며, 직업금지가 있는 노동자를 해당 금기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치할 수 없다. 임신기간, 수유기간의 여성직원을 본인과 태아, 영아에 위해가 되는 업무에 배치할 수 없다.  **제34조** 고용단위는 완벽한 아래의 직업위생 문건자료를 구축해야 한다.  (1) 직업병 예방치료 책임제도 문건  (2) 직업위생 관리규장 제도, 운영규정  (3)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종류 명세서, 부서분포 및 작업인원 접촉상황 등 자료  (4) 직업병 방호시설, 응급구조시설 기본정보 및 그 배치, 사용, 유지관리, 점검수리와 교체 등 기록  (5)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의 검측, 평가보고와 기록  (6) 직업병 방호용품 배치, 배급, 유지관리와 교체 등의 기록  (7) 주요책임인, 직업위생 관리인원과 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업무부서의 노동자 등 관련인원의 직업위생 교육훈련 자료  (8) 직업병 위해사고 보고와 응급처치 기록  (9) 노동자 직업건강 검사결과 종합자료와 직업 금기증, 직업 건강 손상 또는 직업병이 존재하는 노동자 처리와 배치 상황기록  (10) 건설항목 직업위생 “삼동시(三同时)” 유관 기술자료 및 그 비안, 심의, 심사 또는 검수 등 유관 수령증 또는 회답문건  (11) 직업위생 안전허가증 신청수령, 직업병 위해항목 신고 등 유관 수령증 또는 회답문건  (12) 기타 직업위생 관리 관련 자료 또는 문건  **제35조** 고용단위에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시에 소재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과 유관 부문에 보고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직업병 위해요소를 감소, 제거하고 사고의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급성 직업병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는 노동자에 대해 고용단위는 즉시 치료하고, 건강검사와 의학적 관찰을 진행하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단위는 고의로 사고현장을 망가뜨리거나 유관 증거를 훼손할 수 없으며, 직업병 위해사고를 지연, 누락, 허위, 은폐하여 보고할 수 없다.  **제36조** 고용단위가 직업병 환자 또는 직업병 의심환자를 발견한 경우, 국가규정에 따라 즉시 소재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과 유관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37조** 업무장소에서 유독물을 사용하는 고용단위는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에 직업위생 안전허가증을 신청 처리해야 한다.  **제38조** 고용단위는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의 행정 법규 집행인원이 법에 따라 감독검사 직책을 수행할 때 협조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제3장 감독관리**  **제39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고용단위에 대해 유관 직업병 예방치료 법률, 법규, 규장과 국가직업위생표준의 상황을 감독 검사 해야 하며, 중점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1) 직업위생 관리기구 또는 조직의 설치 또는 지정, 전임 또는 겸임 직업위생 관리인원의 배치상황  (2) 직업위생 관리제도와 운영규정의 수립, 시행 및 공포 상황  (3) 주요책임인, 직업위생관리인원과 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업무부서 노동자의 직업위생 교육훈련 상황  (4) 건설항목 직업위생 “삼동시(三同时)”제도 시행상황  (5)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항목 신고상황  (6) 업무장소 직업병 위해요소 모니터링, 검측, 평가 및 결과보고와 공포상황  (7) 직업병 방호시설, 응급구조 시설의 배치, 유지보수, 점검 상황 및 직업병 방호용품의 배급, 관리 및 노동자의 패용 상황  (8) 직업병 위해요소 및 위해결과 경고, 고지상황  (9) 노동자 직업건강 감호, 방사성 업무인원 개인 피폭량 모니터링 상황  (10) 직업병 위해사고 보고상황  (11) 노동자 건강손상과 직업기록, 직업병 위해접촉 관계 등 유관자료 제공상황  (12)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진행하는 기타상황  **제40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완벽한 직업위생 감독검사제도륵 구축하고 행정법규 집행인원의 직업위생 지식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행정법규 집행인원의 업무자질을 제고해야 한다.  **제41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건설항목 직업위생”삼동시(三同时)”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관련자료의 완벽한 문건관리제도를 구축한다.  **제42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직업위생 기술서비스 기구의 자질 인가관리와 기술 서비스 업무의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하며, 직업위생 기술서비스 기구가 공평, 공정, 객관적, 과학적으로 직업위생 기술서비스를 전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43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완벽한 직업병 위해 예방치료 정보통계 분석제도를 수립하고 고용단위의 직업병 위해요소 검측, 평가결과, 노동자 직업건강 감호정보 및 직업위생 감독검사 정보 등 자료의 통계, 종합과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  **제44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유관규정에 따라 유관부문과 기구의 직업병 진단, 감정 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5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의 행정법규 집행인원은 법에 따라 감독검사 직책을 이행할 때, 유효한 집법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법규 집행인원은 맡은 바 직책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법률을 집행해야 한다. 법률집행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고, 검사를 받는 단위의 기술비밀, 업무비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제46조**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감독검사 직무 이행 시, 아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피조사단위 및 업무장소에서 직업병위해 검사, 상황조사 및 검증조사를 진행한다.  (2) 피조사단위 유관 직업병 위해 예방치료의 문건, 자료를 검열 및 복제하고, 유관 샘플을 수집한다.  (3) 직업병 위해 예방치료 법률, 법규를 위반한 단위 및 개인에게 위법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한다.  (4) 직업병 위해 사고를 초래한 작업을 잠정 중단하고, 직업병 위해 사고를 초래하였거나 직업병 위해 사고 발생가능성이 있는 자재 및 설비를 봉쇄하여 보관하도록 명령한다.  (5) 직업병 위해 사고현장 통제를 조직한다.  직업병 위해 사고 또는 위해 상태가 효과적으로 통제된 이후에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즉시 전관 제4항, 제5항 규정의 통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제47조** 직업병 위해 사고 발생 시,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국가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사고 및 사고 조사처리를 보고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48조** 고용단위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고 기한개정을 명령하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유해작업과 무해작업, 업무장소와 생활장소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  (2) 고용단위의 주요책임자, 직업위생 관리인원이 직업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제49조** 고용단위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고, 기한개정을 명령한다. 해당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규정에 따라 직업병 예방치료계획 및 실시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직업위생관리기구나 조직을 설치 또는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임이나 겸임하는 직업위생 관리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직업위생관리제도 및 운영규정을 수립, 완비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직업위생문건 및 노동자 건강검진기록 문건을 수립, 완비하지 않은 경우  (5) 업무장소의 직업병 위해 요소 모니터링 및 평가제도를 수립, 완비하지 않은 경우  (6) 규정에 따라 유관 직업병 예방치료 규장제도, 운영규정, 직업병 위해 사고 응급구조 조치를 공포하지 않은 경우  (7)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직업위생훈련을 받도록 조직하지 않거나 노동자 개인예방에 대하여 효과적인 지도, 독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8) 업무장소의 직업병 위해 요소 모니터링, 평가결과를 규정에 따라 보관, 보고 및 공포하지 않은 경우  **제50조** 고용단위가 아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한개정을 명령하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해가 발생한 프로젝트를 적시에 사실대로 서면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전임 담당자가 직업병 위해 요소의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없게 된 경우  (3) 노동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 시, 노동자에게 직업병 위해의 진상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진행하는 직업건강검진을 규정하지 않고, 직업건강기록 문건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사결과를 노동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5)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고용단위를 떠날 때 직업건강기록문건 사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제51조** 고용단위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고, 기한개정을 명령한다.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유관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1) 업무장소의 직업병 위해 요소 강도 또는 농도가 국가직업위생표준을 초과할 경우  (2) 직업병 보호시설 및 노동자가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직업병 보호시설 및 노동자가 사용하는 직업병 보호용품이 국가직업위생표준 및 위생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3) 규정에 따라 직업병 보호설비, 응급구조 시설 및 노동자 직업병 보호용품에 대하여 유지보호, 검수, 검측을 진행하지 않거나 정상운행 및 사용상태가 유지될 수 없는 경우  (4) 규정에 따라 업무장소의 직업병 위해 요소에 대하여 검측, 현황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5) 업무장소의 직업병 위해 요소가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직업위생표준 및 위생 요구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 직업병 위해 요소가 존재하는 작업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6) 급성 직업병 위해사고가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즉시 응급구조 및 통제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7) 규정에 따라 심각한 직업병 위해가 발생한 작업단위에 눈에 띄이는 위치에 경고표지와 중문경고 설명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8)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의 감독검사를 거절하는 경우  (9) 직업건강기록문건, 업무장소의 직업병 위해 요소 모니터링 평가결과 등 유관자료를 은폐, 위조, 왜곡, 훼손하거나 직업병 진단,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10) 규정에 따라 직업병 진단, 감정비용 및 직업병 환자의 의료, 생활보장비를 부담하지 않은 경우  **제52조** 고용단위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개정을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유관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1) 기술, 공법, 설비, 자재에서 발생하는 직업병 위해를 은폐하여 채용한 경우  (2) 본 단위의 직업위생의 진상을 은폐한 경우  (3) 급성 직업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유독 유해한 업무장소 또는 방사 업무장소가 본 규정 제17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국가가 사용금지를 명령하여 직업병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설비 또는 자재를 사용한 경우  (5)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작업을 직업병 보호조건이 없는 단위 및 개인에게 전이 또는 직업병 보호조건이 없는 단위 및 개인이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작업을 수락하는 경우  (6) 직업병 보호설비 또는 응급구조 시설을 독단적으로 철거, 사용을 중지하는 경우  (7) 직업건강검사를 거치지 않은 노동자, 직업금기가 있는 노동자, 성인근로자 또는 임신, 모유기 여성 노동자를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작업 또는 금기작업에 종사하도록 안배한 경우  (8) 법규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직업병 보호조치가 없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위 및 강제 명령한 경우  **제53조** 고용단위가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 규정을 위반하여 노동자 생명 건강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거나 유관 인민정부가 국무원이 규정한 권한에 따라 폐쇄 명령할 것을 요청한다.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 직업병 위해사고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 및 기타 직접적인 책임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54조** 고용단위에게 직업병 위해가 발생하는 설비 또는 자재를 제공하고, 규정에 따라 중문설명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고표지 및 중문경고설명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기한개정을 명령하고, 경고 처분을 내린다.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고용단위가 규정에 따라 직업병, 의심되는 직업병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개정을 명령하고, 경고 처분을 내린다.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로 날조하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6조** 안전생산감독부문 및 그 행정 법 집행인원이 규정에 따라 직업위해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규명한다.  **제57조** 본 규정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은 현급 이상의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이 결정한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유관 규정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결정기관이 별도로 규정하며 그 규정을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58조** 본 규정 용어의 함의는 아래와 같다.  (1) 업무장소는 건설단위 시공현장소를 포함하여 노동자가 직업활동을 하는 모든 지점을 가리킨다.  (2) 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고용단위는 건설프로젝트 직업병 위해 분류관리목록 가운데 나열된 직업병 위해가 심각한 업종의 고용단위를 가리킨다.  건설프로젝트 직업병 위해 분류관리목록은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공포한다. 각 성급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은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분류목록에 대하여 규정을 보충할 수 있다.  **제59조** 본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기타 유관 직업병 예방치료 사항은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치료법》과 그 기타 유관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0조** 탄광의 직업병 예방치료 및 탄광 안전감찰기구는 그 실시감찰에 대하여 본 규정 및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의 기타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61조** 본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9년 7월 1일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공포한 《업무장소 직업건강 감독관리 잠행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  | **工作场所职业卫生监督管理规定**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令第47号  《工作场所职业卫生监督管理规定》已经2012年3月6日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局长办公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2年6月1日起施行。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2009年7月1日公布的《作业场所职业健康监督管理暂行规定》同时废止。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 骆琳  二○一二年四月二十七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加强职业卫生监督管理工作，强化用人单位职业病防治的主体责任，预防、控制职业病危害，保障劳动者健康和相关权益，根据《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用人单位的职业病防治和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对其实施监督管理，适用本规定。  **第三条** 用人单位应当加强职业病防治工作，为劳动者提供符合法律、法规、规章、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的工作环境和条件，并采取有效措施保障劳动者的职业健康。  **第四条** 用人单位是职业病防治的责任主体，并对本单位产生的职业病危害承担责任。用人单位的主要负责人对本单位的职业病防治工作全面负责。  **第五条** 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依照《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和国务院规定的职责，负责全国用人单位职业卫生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和本级人民政府规定的职责，负责本行政区域内用人单位职业卫生的监督管理工作。  **第六条** 为职业病防治提供技术服务的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应当依照《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监督管理暂行办法》和有关标准、规范、执业准则的要求，为用人单位提供技术服务。  **第七条** 任何单位和个人均有权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举报用人单位违反本规定的行为和职业病危害事故。  **第二章 用人单位的职责**  **第八条** 职业病危害严重的用人单位，应当设置或者指定职业卫生管理机构或者组织，配备专职职业卫生管理人员。  其他存在职业病危害的用人单位，劳动者超过100人的，应当设置或者指定职业卫生管理机构或者组织，配备专职职业卫生管理人员；劳动者在100人以下的，应当配备专职或者兼职的职业卫生管理人员，负责本单位的职业病防治工作。  **第九条** 用人单位的主要负责人和职业卫生管理人员应当具备与本单位所从事的生产经营活动相适应的职业卫生知识和管理能力，并接受职业卫生培训。  用人单位主要负责人、职业卫生管理人员的职业卫生培训，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  （一）职业卫生相关法律、法规、规章和国家职业卫生标准；  （二）职业病危害预防和控制的基本知识；  （三）职业卫生管理相关知识；  （四）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规定的其他内容。  **第十条** 用人单位应当对劳动者进行上岗前的职业卫生培训和在岗期间的定期职业卫生培训，普及职业卫生知识，督促劳动者遵守职业病防治的法律、法规、规章、国家职业卫生标准和操作规程。  用人单位应当对职业病危害严重的岗位的劳动者，进行专门的职业卫生培训，经培训合格后方可上岗作业。  因变更工艺、技术、设备、材料，或者岗位调整导致劳动者接触的职业病危害因素发生变化的，用人单位应当重新对劳动者进行上岗前的职业卫生培训。  **第十一条** 存在职业病危害的用人单位应当制定职业病危害防治计划和实施方案，建立、健全下列职业卫生管理制度和操作规程：  （一）职业病危害防治责任制度；  （二）职业病危害警示与告知制度；  （三）职业病危害项目申报制度；  （四）职业病防治宣传教育培训制度；  （五）职业病防护设施维护检修制度；  （六）职业病防护用品管理制度；  （七）职业病危害监测及评价管理制度；  （八）建设项目职业卫生“三同时”管理制度；  （九）劳动者职业健康监护及其档案管理制度；  （十）职业病危害事故处置与报告制度；  （十一）职业病危害应急救援与管理制度；  （十二）岗位职业卫生操作规程；  （十三）法律、法规、规章规定的其他职业病防治制度。  **第十二条** 产生职业病危害的用人单位的工作场所应当符合下列基本要求：  （一）生产布局合理，有害作业与无害作业分开；  （二）工作场所与生活场所分开，工作场所不得住人；  （三）有与职业病防治工作相适应的有效防护设施；  （四）职业病危害因素的强度或者浓度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  （五）有配套的更衣间、洗浴间、孕妇休息间等卫生设施；  （六）设备、工具、用具等设施符合保护劳动者生理、心理健康的要求；  （七）法律、法规、规章和国家职业卫生标准的其他规定。  **第十三条** 用人单位工作场所存在职业病目录所列职业病的危害因素的，应当按照《职业病危害项目申报办法》的规定，及时、如实向所在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申报职业病危害项目，并接受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的监督检查。  **第十四条** 新建、改建、扩建的工程建设项目和技术改造、技术引进项目（以下统称建设项目）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建设单位应当按照《建设项目职业卫生“三同时”监督管理暂行办法》的规定，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申请备案、审核、审查和竣工验收。  **第十五条** 产生职业病危害的用人单位，应当在醒目位置设置公告栏，公布有关职业病防治的规章制度、操作规程、职业病危害事故应急救援措施和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结果。  存在或者产生职业病危害的工作场所、作业岗位、设备、设施，应当按照《工作场所职业病危害警示标识》（GBZ158）的规定，在醒目位置设置图形、警示线、警示语句等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警示说明应当载明产生职业病危害的种类、后果、预防和应急处置措施等内容。  存在或产生高毒物品的作业岗位，应当按照《高毒物品作业岗位职业病危害告知规范》（GBZ/T203）的规定，在醒目位置设置高毒物品告知卡，告知卡应当载明高毒物品的名称、理化特性、健康危害、防护措施及应急处理等告知内容与警示标识。  **第十六条** 用人单位应当为劳动者提供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的职业病防护用品，并督促、指导劳动者按照使用规则正确佩戴、使用，不得发放钱物替代发放职业病防护用品。  用人单位应当对职业病防护用品进行经常性的维护、保养，确保防护用品有效，不得使用不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或者已经失效的职业病防护用品。  **第十七条** 在可能发生急性职业损伤的有毒、有害工作场所，用人单位应当设置报警装置，配置现场急救用品、冲洗设备、应急撤离通道和必要的泄险区。  现场急救用品、冲洗设备等应当设在可能发生急性职业损伤的工作场所或者临近地点，并在醒目位置设置清晰的标识。  在可能突然泄漏或者逸出大量有害物质的密闭或者半密闭工作场所，除遵守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外，用人单位还应当安装事故通风装置以及与事故排风系统相连锁的泄漏报警装置。  生产、销售、使用、贮存放射性同位素和射线装置的场所，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明显的放射性标志，其入口处应当按照国家有关安全和防护标准的要求，设置安全和防护设施以及必要的防护安全联锁、报警装置或者工作信号。放射性装置的生产调试和使用场所，应当具有防止误操作、防止工作人员受到意外照射的安全措施。用人单位必须配备与辐射类型和辐射水平相适应的防护用品和监测仪器，包括个人剂量测量报警、固定式和便携式辐射监测、表面污染监测、流出物监测等设备，并保证可能接触放射线的工作人员佩戴个人剂量计。  **第十八条** 用人单位应当对职业病防护设备、应急救援设施进行经常性的维护、检修和保养，定期检测其性能和效果，确保其处于正常状态，不得擅自拆除或者停止使用。  **第十九条** 存在职业病危害的用人单位，应当实施由专人负责的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日常监测，确保监测系统处于正常工作状态。  **第二十条** 存在职业病危害的用人单位，应当委托具有相应资质的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每年至少进行一次职业病危害因素检测。  职业病危害严重的用人单位，除遵守前款规定外，应当委托具有相应资质的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每三年至少进行一次职业病危害现状评价。  检测、评价结果应当存入本单位职业卫生档案，并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报告和劳动者公布。  **第二十一条** 存在职业病危害的用人单位，有下述情形之一的，应当及时委托具有相应资质的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进行职业病危害现状评价：  （一）初次申请职业卫生安全许可证，或者职业卫生安全许可证有效期届满申请换证的；  （二）发生职业病危害事故的；  （三）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规定的其他情形。  用人单位应当落实职业病危害现状评价报告中提出的建议和措施，并将职业病危害现状评价结果及整改情况存入本单位职业卫生档案。  **第二十二条** 用人单位在日常的职业病危害监测或者定期检测、现状评价过程中，发现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不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时，应当立即采取相应治理措施，确保其符合职业卫生环境和条件的要求；仍然达不到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的，必须停止存在职业病危害因素的作业；职业病危害因素经治理后，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的，方可重新作业。  **第二十三条** 向用人单位提供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设备的，应当提供中文说明书，并在设备的醒目位置设置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警示说明应当载明设备性能、可能产生的职业病危害、安全操作和维护注意事项、职业病防护措施等内容。  用人单位应当检查前款规定的事项，不得使用不符合要求的设备。  **第二十四条** 向用人单位提供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化学品、放射性同位素和含有放射性物质的材料的，应当提供中文说明书。说明书应当载明产品特性、主要成份、存在的有害因素、可能产生的危害后果、安全使用注意事项、职业病防护和应急救治措施等内容。产品包装应当有醒目的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贮存上述材料的场所应当在规定的部位设置危险物品标识或者放射性警示标识。  用人单位应当检查前款规定的事项，不得使用不符合要求的材料。  **第二十五条** 任何用人单位不得使用国家明令禁止使用的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设备或者材料。  **第二十六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将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转移给不具备职业病防护条件的单位和个人。不具备职业病防护条件的单位和个人不得接受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  **第二十七条** 用人单位应当优先采用有利于防治职业病危害和保护劳动者健康的新技术、新工艺、新材料、新设备，逐步替代产生职业病危害的技术、工艺、材料、设备。  **第二十八条** 用人单位对采用的技术、工艺、材料、设备，应当知悉其可能产生的职业病危害，并采取相应的防护措施。对有职业病危害的技术、工艺、设备、材料，故意隐瞒其危害而采用的，用人单位对其所造成的职业病危害后果承担责任。  **第二十九条** 用人单位与劳动者订立劳动合同（含聘用合同，下同）时，应当将工作过程中可能产生的职业病危害及其后果、职业病防护措施和待遇等如实告知劳动者，并在劳动合同中写明，不得隐瞒或者欺骗。  劳动者在履行劳动合同期间因工作岗位或者工作内容变更，从事与所订立劳动合同中未告知的存在职业病危害的作业时，用人单位应当依照前款规定，向劳动者履行如实告知的义务，并协商变更原劳动合同相关条款。  用人单位违反本条规定的，劳动者有权拒绝从事存在职业病危害的作业，用人单位不得因此解除与劳动者所订立的劳动合同。  **第三十条** 对从事接触职业病危害因素作业的劳动者，用人单位应当按照《用人单位职业健康监护监督管理办法》、《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职业健康监护技术规范》（GBZ188）、《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监护技术规范》（GBZ235）等有关规定组织上岗前、在岗期间、离岗时的职业健康检查，并将检查结果书面如实告知劳动者。  职业健康检查费用由用人单位承担。  **第三十一条** 用人单位应当按照《用人单位职业健康监护监督管理办法》的规定，为劳动者建立职业健康监护档案，并按照规定的期限妥善保存。  职业健康监护档案应当包括劳动者的职业史、职业病危害接触史、职业健康检查结果、处理结果和职业病诊疗等有关个人健康资料。  劳动者离开用人单位时，有权索取本人职业健康监护档案复印件，用人单位应当如实、无偿提供，并在所提供的复印件上签章。  **第三十二条** 劳动者健康出现损害需要进行职业病诊断、鉴定的，用人单位应当如实提供职业病诊断、鉴定所需的劳动者职业史和职业病危害接触史、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结果和放射工作人员个人剂量监测结果等资料。  **第三十三条** 用人单位不得安排未成年工从事接触职业病危害的作业，不得安排有职业禁忌的劳动者从事其所禁忌的作业，不得安排孕期、哺乳期女职工从事对本人和胎儿、婴儿有危害的作业。  **第三十四条** 用人单位应当建立健全下列职业卫生档案资料：  （一）职业病防治责任制文件；  （二）职业卫生管理规章制度、操作规程；  （三）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种类清单、岗位分布以及作业人员接触情况等资料；  （四）职业病防护设施、应急救援设施基本信息，以及其配置、使用、维护、检修与更换等记录；  （五）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评价报告与记录；  （六）职业病防护用品配备、发放、维护与更换等记录；  （七）主要负责人、职业卫生管理人员和职业病危害严重工作岗位的劳动者等相关人员职业卫生培训资料；  （八）职业病危害事故报告与应急处置记录；  （九）劳动者职业健康检查结果汇总资料，存在职业禁忌证、职业健康损害或者职业病的劳动者处理和安置情况记录；  （十）建设项目职业卫生“三同时”有关技术资料，以及其备案、审核、审查或者验收等有关回执或者批复文件；  （十一）职业卫生安全许可证申领、职业病危害项目申报等有关回执或者批复文件；  （十二）其他有关职业卫生管理的资料或者文件。  **第三十五条** 用人单位发生职业病危害事故，应当及时向所在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门报告，并采取有效措施，减少或者消除职业病危害因素，防止事故扩大。对遭受或者可能遭受急性职业病危害的劳动者，用人单位应当及时组织救治、进行健康检查和医学观察，并承担所需费用。  用人单位不得故意破坏事故现场、毁灭有关证据，不得迟报、漏报、谎报或者瞒报职业病危害事故。  **第三十六条** 用人单位发现职业病病人或者疑似职业病病人时，应当按照国家规定及时向所在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有关部门报告。  **第三十七条** 工作场所使用有毒物品的用人单位，应当按照有关规定向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申请办理职业卫生安全许可证。  **第三十八条** 用人单位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行政执法人员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时，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挠。  **第三章 监督管理**  **第三十九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依法对用人单位执行有关职业病防治的法律、法规、规章和国家职业卫生标准的情况进行监督检查，重点监督检查下列内容：  （一）设置或者指定职业卫生管理机构或者组织，配备专职或者兼职的职业卫生管理人员情况；  （二）职业卫生管理制度和操作规程的建立、落实及公布情况；  （三）主要负责人、职业卫生管理人员和职业病危害严重的工作岗位的劳动者职业卫生培训情况；  （四）建设项目职业卫生“三同时”制度落实情况；  （五）工作场所职业病危害项目申报情况；  （六）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监测、检测、评价及结果报告和公布情况；  （七）职业病防护设施、应急救援设施的配置、维护、保养情况，以及职业病防护用品的发放、管理及劳动者佩戴使用情况；  （八）职业病危害因素及危害后果警示、告知情况；  （九）劳动者职业健康监护、放射工作人员个人剂量监测情况；  （十）职业病危害事故报告情况；  （十一）提供劳动者健康损害与职业史、职业病危害接触关系等相关资料的情况；  （十二）依法应当监督检查的其他情况。  **第四十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职业卫生监督检查制度，加强行政执法人员职业卫生知识的培训，提高行政执法人员的业务素质。  **第四十一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建设项目职业卫生“三同时”的监督管理，建立健全相关资料的档案管理制度。  **第四十二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加强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的资质认可管理和技术服务工作的监督检查，督促职业卫生技术服务机构公平、公正、客观、科学地开展职业卫生技术服务。  **第四十三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健全职业病危害防治信息统计分析制度，加强对用人单位职业病危害因素检测、评价结果、劳动者职业健康监护信息以及职业卫生监督检查信息等资料的统计、汇总和分析。  **第四十四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按照有关规定，支持、配合有关部门和机构开展职业病的诊断、鉴定工作。  **第四十五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行政执法人员依法履行监督检查职责时，应当出示有效的执法证件。  行政执法人员应当忠于职守，秉公执法，严格遵守执法规范；涉及被检查单位的技术秘密、业务秘密以及个人隐私的，应当为其保密。  **第四十六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进入被检查单位及工作场所，进行职业病危害检测，了解情况，调查取证；  （二）查阅、复制被检查单位有关职业病危害防治的文件、资料，采集有关样品；  （三）责令违反职业病防治法律、法规的单位和个人停止违法行为；  （四）责令暂停导致职业病危害事故的作业，封存造成职业病危害事故或者可能导致职业病危害事故发生的材料和设备；  （五）组织控制职业病危害事故现场。  在职业病危害事故或者危害状态得到有效控制后，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及时解除前款第四项、第五项规定的控制措施。  **第四十七条** 发生职业病危害事故，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报告事故和组织事故的调查处理。  **第四章 法律责任**  **第四十八条**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可以并处5千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规定实行有害作业与无害作业分开、工作场所与生活场所分开的；  （二）用人单位的主要负责人、职业卫生管理人员未接受职业卫生培训的。  **第四十九条**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10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规定制定职业病防治计划和实施方案的；  （二）未按照规定设置或者指定职业卫生管理机构或者组织，或者未配备专职或者兼职的职业卫生管理人员的；  （三）未按照规定建立、健全职业卫生管理制度和操作规程的；  （四）未按照规定建立、健全职业卫生档案和劳动者健康监护档案的；  （五）未建立、健全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监测及评价制度的；  （六）未按照规定公布有关职业病防治的规章制度、操作规程、职业病危害事故应急救援措施的；  （七）未按照规定组织劳动者进行职业卫生培训，或者未对劳动者个体防护采取有效的指导、督促措施的；  （八）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评价结果未按照规定存档、上报和公布的。  **第五十条**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一）未按照规定及时、如实申报产生职业病危害的项目的；  （二）未实施由专人负责职业病危害因素日常监测，或者监测系统不能正常监测的；  （三）订立或者变更劳动合同时，未告知劳动者职业病危害真实情况的；  （四）未按照规定组织劳动者进行职业健康检查、建立职业健康监护档案或者未将检查结果书面告知劳动者的；  （五）未按照规定在劳动者离开用人单位时提供职业健康监护档案复印件的。  **第五十一条**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关闭：  （一）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的强度或者浓度超过国家职业卫生标准的；  （二）未提供职业病防护设施和劳动者使用的职业病防护用品，或者提供的职业病防护设施和劳动者使用的职业病防护用品不符合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的；  （三）未按照规定对职业病防护设备、应急救援设施和劳动者职业病防护用品进行维护、检修、检测，或者不能保持正常运行、使用状态的；  （四）未按照规定对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进行检测、现状评价的；  （五）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经治理仍然达不到国家职业卫生标准和卫生要求时，未停止存在职业病危害因素的作业的；  （六）发生或者可能发生急性职业病危害事故，未立即采取应急救援和控制措施或者未按照规定及时报告的；  （七）未按照规定在产生严重职业病危害的作业岗位醒目位置设置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的；  （八）拒绝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监督检查的；  （九）隐瞒、伪造、篡改、毁损职业健康监护档案、工作场所职业病危害因素检测评价结果等相关资料，或者不提供职业病诊断、鉴定所需要资料的；  （十）未按照规定承担职业病诊断、鉴定费用和职业病病人的医疗、生活保障费用的。  **第五十二条** 用人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责令限期改正，并处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止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关闭：  （一）隐瞒技术、工艺、设备、材料所产生的职业病危害而采用的；  （二）隐瞒本单位职业卫生真实情况的；  （三）可能发生急性职业损伤的有毒、有害工作场所或者放射工作场所不符合本规定第十七条规定的；  （四）使用国家明令禁止使用的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设备或者材料的；  （五）将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转移给没有职业病防护条件的单位和个人，或者没有职业病防护条件的单位和个人接受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的；  （六）擅自拆除、停止使用职业病防护设备或者应急救援设施的；  （七）安排未经职业健康检查的劳动者、有职业禁忌的劳动者、未成年工或者孕期、哺乳期女职工从事接触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或者禁忌作业的。  （八）违章指挥和强令劳动者进行没有职业病防护措施的作业的。  **第五十三条** 用人单位违反《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的规定，已经对劳动者生命健康造成严重损害的，责令停止产生职业病危害的作业，或者提请有关人民政府按照国务院规定的权限责令关闭，并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造成重大职业病危害事故或者其他严重后果，构成犯罪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四条** 向用人单位提供可能产生职业病危害的设备或者材料，未按照规定提供中文说明书或者设置警示标识和中文警示说明的，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第五十五条** 用人单位未按照规定报告职业病、疑似职业病的，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1万元以下的罚款；弄虚作假的，并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第五十六条**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及其行政执法人员未按照规定报告职业病危害事故的，依照有关规定给予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五十七条** 本规定所规定的行政处罚，由县级以上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决定。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有关规定对行政处罚决定机关另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五章 附 则**  **第五十八条** 本规定下列用语的含义：  （一）工作场所，是指劳动者进行职业活动的所有地点，包括建设单位施工场所；  （二）职业病危害严重的用人单位，是指建设项目职业病危害分类管理目录中所列职业病危害严重行业的用人单位。  建设项目职业病危害分类管理目录由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公布。各省级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可以根据本地区实际情况，对分类目录作出补充规定。  **第五十九条** 本规定未规定的其他有关职业病防治事项，依照《中华人民共和国职业病防治法》和其他有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执行。  **第六十条** 煤矿的职业病防治和煤矿安全监察机构对其实施监察，依照本规定和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的其他有关规定执行。  **第六十一条** 本规定自2012年6月1日起施行。2009年7月1日国家安全生产监督管理总局公布的《作业场所职业健康监督管理暂行规定》同时废止。 |